

귀여운 희망입니다

전북 海 사랑자



해양수산부



천·년·의·비·상

전라북도



군산시수협

귀어귀촌 준비는 전라북도에서

2020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안내



전라북도
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





| 사업개요

창업초기 **청년어업인**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

1 년차	월 100 만원	12,000만원
2 년차	월 90 만원	10,800만원
3 년차	월 80 만원	9,600만원

- 창업예정자의 경우 **1**년차로 간주

지자체 보조: 국고 **70%**, 지방비 **30%** (일부 정액 지원)

민간 보조: 국고 **100%** (정액 지원)



| 연도별재정투입계획



(단위:백만원)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합계	877	2,248	3,037	3,037
국비	604	1,474	2,116	2,116
지방비	273	774	921	921
자부담	-	-	-	-



| 사업대상자

만 **40**세 미만 어업경력 **3**년 이하의 귀어인 및
후계어업경영인중 신규어업창업(예정)자

- 단, 사업대상자 선정시 1순위 귀어인, 2순위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함

- 귀어인: 농어업이외의지역에거주하는 **어업인이 아닌 사람** 이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**농어촌지역**으로 이주한 사람
- 후계어업경영인: 어업경력 10년 미만인 사람으로 만18세 이상~50세 미만





| 지원대상-자격및요건

연령 - 사업시행연도기준 만**18**이상~ 만**40**세미만

- 선발시만 40세미만인 자가지급기간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지급가능
- 지급기간중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영어경력 3년 이하요건은 충족해야지급가능

거주지 - 영어기반 해당 시·군·구에 실제 거주 (주민등록포함)

영어경력 - 만**40**세 미만 어업경력 **3**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(예정)자

- 어업: 수산동식물을 포획(捕獲)·채취(採取)하거나 양식하는 산업,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

병역 -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
-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, 타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제외



| 지원대상 - 제외대상
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

1. 경영주(부모)를 도와 함께 영어하는 자
2. 어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지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
3. 병역미필자
4. 주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은 자

- 농업분야 등 타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

-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

-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

- 국가법령정보센터 (www.law.go.kr)



|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관계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
- 어가경영비, 창업관련교육비, 컨설팅상품화개발비, 마케팅비용, 소모성영어기자재구입, 보험가입 등 영업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
- 단, 양식장, 어선,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
-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



| 지원(사용)방법

구분	내용
시·군·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 선지급 - 매월사용내역과 잔액을 확인, 매월 지원단가에서 잔액 차감 후 선집행 <p>예) 2년차청년어업인이 1월에 50만원을 사용하고 40만원남은경우 2월에는 50만원만 선지급</p>
청년어업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월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착지원금사용내역서 작성 후 제출 - 별도의 계좌 개설, 체크(직불)카드 발급 후 자금사용 - 지원단가 초과하여 구매불가, 매월 지원액 중 잔액은 소멸 <p>예) 1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수없음 (단가가 100만원인 물품 3개는 구입가능)</p>



지원대상의무사항및제재조치

의무사항	준수사항	위반및조치사항(제재)
의무교육이수 (매년20시간)	귀어귀촌종합(주말)교육,어업창업 및기술교육귀어학교귀어귀촌박람회 *귀어귀촌지원센터지자체등에서실사하는 교육도인정	교육시간미충족시지원금일시정지 *20년사업부터는연내교육시간미충족시 지원금환수예정
영어계획이행	사전승인없이임의영어계획변경금지	임의변경시지원금지급중단
전업적 영어유지	상근고용,어업과무관사업체경영금지	위반시점부터 지원금 환수(월할)

지원대상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

의무사항		준수사항	위반및조치사항(제재)
성실 신고	제출 서류	영어계획서, 의료보험부과액등	지원금전액환수
	이행 점검	영어이행실적보고	허위작성시점부터지원금환수(월할)
의무영어 기간준수		지급기간만큼추가영어종사의무	실제 영어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어의무 종사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

*지급대상자 권고사항- 귀어귀촌 및 어업창업기술교육(1개월과정)이수, 귀어학교(2개월 과정) 수료와 배합사료 사용, 재해보험가입, 자조금 가입(해수부지원자조금품목) 등 국가시책 적극참여 권고





SP에 따른 담당기관역할

사업신청단계

해양수산부	-사업추진계획,세부사업계획통보및사업량배정
시·도 (시·군·구)	-공고(최소 10 일이상), 신청서접수
신청자 (보조사업자)	<p>- 청년어업인신청서(준비단계,창업단계)제출 (주민등록기준거주지관할시·군·구) *다만,창업준비단계로신청하는자는정착예정지역의주소지시·군·구에접수</p> <p>제출서류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(준비,창업),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 어업경영체등록증, 금융기관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행 - www.kcredit.or.kr) 등</p> <p>* 신용제한정보(연체기록 등) 없는 자여야 함 * 어업인후계자이나어업경영체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, 제출생략가능하되연내 등록 후 서류보완</p>





| SP에 따른 담당기관역할

사업선정단계 - 심사

시·군·구 (지자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후보자신청서접수 - 서면평가후면접대상자선정 - 평가위원회평가점수가사 60점 이상사업대상자선정시·도제출
시·도	-시·군·구의선정결과해양수산부제출



SP에 따른 담당기관역할

자금배정단계 - 교부

해양수산부	- 사업대상자 수에 따라 보조금 교부 (반기)
시·도 (시·군·구)	- 매월 사업대상자 자금 집행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업대상자는 별도 계좌개설 체크(직불)카드로 지출 * 예산편성지연의 경우, 예산편성 후 소급지급 </div>
신청자	- 집행실적제출 - 집행계좌개설 - 체크(직불)카드 사용 - 창업계획변경시 변경신청(신고)서 제출 후 승인



SP에 따른 담당기관역할

사후관리단계

지자체장은 자금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연도부터 상환일까지 분기1회 이상 방문실태조사 실시

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를 작성 후 지자체에 제출

지급정지 또는 제재

- * 청년어업인(준비과정)으로 선정되어 정착지원금 지원 후 창업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- **완료월까지 지급정지**
- *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 미제출시 - **지급정지**
- * 사업장 이탈 또는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어업에 미종사 - **회수**
- * 사업희변경 미승인 후 변경사업시행 - **회수**
- *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- **회수**
- * 형집행중인 관계로 어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- **회수**
- * 수산관계법령위반으로 어업면허허가취서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- **회수**
- * 타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 및 연봉을 받는 경우 - **회수**
- 어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취업(3개월 이내)
-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 격주 근무 등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 취업





| 용어정리

귀어업인 - 농어업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**어업인**
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**농어촌지역**으로 이주한 사람

재촌비업인 - **농어촌지역**에 거주하면서 **어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**

어촌 - 하천·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

- 읍·면의전지역

- 동지역중 '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
어업 -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,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

- 해면어업, 내수면어업, 해수양식어업, 담수양식어업, 소금생산업, 수산종자생산업, 관상어양식업



전라북도
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

전북
해
살
자
귀어는 희망입니다

| 용어정리

어업인 - 어업경영 및 어업경영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
-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
-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

어촌비즈니스업 - 어촌관광사업, 해양수산레저사업

어촌관광사업 : 지정된 어촌체험마을에 채용(사무장 등)되거나, 운영진에 포함 또는 체험마을 구성원 해당되는 자가 **체험휴양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어촌관광**(식사, 숙박, 체험, 판매 등) 사업

해양수산레저사업 : 수상레저활동 및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, 일반형 체험활동

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,세이링요트,수상오토바이,고무보트,스쿠터수상스키등
수상형체험활동,선박·기구등을이용하지아니하고수상에서이루어지는체험활동
수중형체험활동,휴대용수중호흡기등을사용하여수중에서이루어는체험활동
일반형체험활동,수상형·수중형체험활동외에연안해역에서이루어지는체험활동





| 전라북도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연락처



www.jbsealife.org

tel. (063)450-6651

fax. (063)450-6607

 @jbsealife.org

 **jbsealife**
Instagram

 전라북도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





전라북도 시군 귀어관련부서 연락처

전라북도지역번호_063

시군	부서	연락처
고창군	해양수산과	560-2632
군산시	수산진흥과	454-2893
김제시	새만금해양과	540-3180
남원군	축산과	620-6414
무주군	농축산유통과	320-2826
부안군	해양수산과	580-4488
순창군	농축산과	650-517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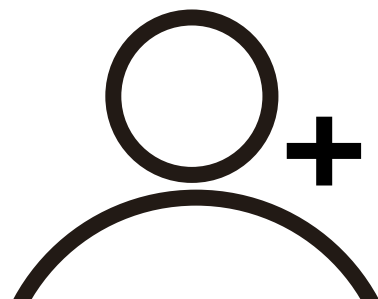
시군	부서	연락처
완주군	농업축산과	290-3248
익산시	축산과	859-4508
임실군	농촌활력과	640-2425
장수군	농업정책과	350-2417
전주시	동물복지과	281-5072
정읍시	농수산유통과	539-6236
진안군	축산진흥과	430-8670



전라북도
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



2020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안내





2020 전라북도 사자성어

自強不息

"스스로 힘써

노력하기를 쉬지 않는다"

自 스스로 자.
強 강할 강.
不 아닐 불.
息 쉴 식.



전라북도
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



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바로 “**지금**”
 “**헌짓**”를 소중히 여기며 살자.

여러분의 희망을 **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**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

**전라북도
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**